

#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나채준



지역법제 Issue Paper 16-16-①

#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나 채 준

#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Legislative Issues on Child Abuse  
Prevention in UK

연구자 : 나채준(연구위원)  
Na, Chaejoon

2016. 11. 30.

# 목 차

제 1 장 연구의 목적 .....	5
제 2 장 영국의 영유아 학대 관련 최근 동향 .....	7
제 3 장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 정책 및 제도 .....	9
I. 개 관 .....	9
II. 영국의 영유아 보호제도 .....	10
1. 아동의 신변에 대한 안전신고제도 .....	10
2. 아동에 대한 권한 위탁 및 사건 조사 .....	11
3.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 .....	14
4. 아동학대 중대 사례 검토(Serious Case Review; SCR) .....	15
III.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 관련 법률 .....	17
1. 개 관 .....	17
2.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 법률의 발달과정 .....	19
3. 1989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 .....	20
4. 1989년 아동법 이후 .....	22
5. 2004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2004) .....	23
6. 2004년 아동법 이후 .....	25
IV. 기타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 관련 법률 .....	27
1. 개 관 .....	27
2. 1997년 성범죄자 법(Sex Offenders Act 1997) .....	27
3.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t 2003) .....	28

4. 2003년 여성 할례법(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2003) .....	28
5. 2004년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	29
6. 2005년 중대 조직범죄와 경찰법(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 .....	29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	31
관련법률 및 참고자료 .....	33

## 제 1 장 연구의 목적

- 최근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의 영유아 아동에 대한 폭행 및 학대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가정 내에서의 부모나 친족들에 의한 아동폭행 사례가 늘고 있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학대를 목격한 비율이 9.3%에 달하고, 원장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교사도 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sup>1)</sup>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당한 학대 경험은 7.7%, 다른 아이가 학대 당하는 것을 목격한 비율도 7.1%로 나타남. 특히 학대행위를 목격한 보육교사 10명 중 4~5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특별법’ 등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영유아 아동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sup>2)</sup>을 제정하는 등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음.
- 이러한 영유아 아동에 대한 폭행 및 학대행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의 경우에도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예고되고 있음.

---

1) 이경숙 교수(한신대 재활학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영유아 돌봄기관의 영유아 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보고서.  
2)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에서 처벌이 미약하다라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제정한 법률로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제 1 장 연구의 목적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영국의 영유아 학대 관련 최근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과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방지 제도개선 의 시사점으로 삼고자 함. 다만,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영국의 법적, 제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영유아 및 아동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제 2 장 영국의 영유아 학대 관련 최근 동향

- 영국에는 1억 1천 명의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이 있고(2014년 기준), 그 중 학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은 5만 7천명으로 집계되고 있음(2015년 기준).
- 9만 3천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보호센터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보호센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반 이상이 학대 혹은 방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2015년 기준).
- 2015년 2만 3천명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아동전화상담소에 학대 문제로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국 경찰에 따르면 2015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1만 건 이상의 학대와 방치 사건이 집계됨.
- 현재 영국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동 보호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숫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sup>3)</sup>
- 영국 BBC는 잉글랜드에서 발생하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학대 범죄의 90%가 경찰에 적발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를 방송하여 영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림.
  - BBC는 앤 롱필드 잉글랜드 아동위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2012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년간 잉글랜드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성학대는 최대 45만건으로 추정되지만, 같은 기간 경찰이 적발한 사례는 5만건에 불과해 약 90%의 아동 성학대 범죄가 적발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

3) 반면 살인, 폭행으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의 사망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 2 장 영국의 영유아 학대 관련 최근 동향

- 특히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아동 성학대 범죄 중 3분의 1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아동이 성학대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려도 성학대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 3 장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 정책 및 제도

### I. 개 관

- 영국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로 구성된 연방 국가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아동 보호 시스템과 법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동일한 연방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유한성을 가지고 있음.
- 영국에서는 교육부가 아동보호의 책임을 맡고 있음. 교육부에서는 아동보호 시스템이 어떠한 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정책, 법률, 법령 지침을 수립함.
-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LSCBs)가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관리함.
  - 각각의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에는 지방 당국, 건강 기관, 경찰뿐만 아니라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기관들까지도 포함됨.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는 지역 아동보호 정책, 절차, 지침에 책임을 지고 있음.
- 교육부는 2015년 3월에 아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핵심 법령 지침(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2015)을 수정하여 발간함 (이전 버전은 2013년에 발간됨). 이 가이드는 조직들과 개인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전문의들에 의한 아동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담고 있음.

## II. 영국의 영유아 보호제도

### 1. 아동의 신변에 대한 안전신고제도

- 법과 정책에는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여겨질 경우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를 인정하고 신고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음.
  - 아동이 거주하는 지방 당국의 아동보호팀에 대한 신고
  - 아동이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봉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에 따름. 예를 들어 병원에는 아동보호문제를 다루는 의사나 간호사를 지정하여야 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보호 담당 교사를 지정하여야 함.
  - 국립 아동학대 예방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에 익명으로 직장 내의 아동보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할 수 있음.
-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사건은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지침에 포함됨. 그동안 아동학대나 방치사건과 관련하여 언제 지방당국이 영국 교육청(Ofsted)과 적절한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에 알려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 핵심 법령 지침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사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2015, chapter 4, sec. 13-16).<sup>4)</sup>

4)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19595/Working\\_Together\\_to\\_Safeguard\\_Children.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19595/Working_Together_to_Safeguard_Children.pdf)

-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사건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 경우가 포함됨.
  - ① 아동이 사망하고(자살 포함) 학대, 방임이 알려졌거나 의심될 경우
  - ② 아동이 심각하게 상해를 입고 학대, 방임이 알려졌거나 의심될 경우
  - ③ 보호하는 아동이 사망한 경우(학대, 방임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의심되지 않을 경우도 포함)
  - ④ 규제된 환경이나 서비스 안에서 아동이 사망한 경우(학대, 방임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의심되지 않을 경우도 포함)
- 핵심 법령 지침에 중대 사례 검토의 기준에 맞는 사건은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사건의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고 설명함. 하지만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모든 사건이 중대 사례 검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됨.

## 2. 아동에 대한 권한 위탁 및 사건 조사

- 아동 신변안전 신고 후 일반 시민이나 전문직 종사자는 지방 당국의 아동보호팀이나 경찰에 아동보호에 대한 권한을 위탁하거나 요청할 수 있음. 신고가 위탁될 경우, 경찰이나 지방당국 아동보호팀은 해당 아동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져 있는지 먼저 조사해야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지방당국이나 국립 아동학대 예방 협회 책임자가 법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음.
- 긴급 보호 명령: 긴급한 상황일 경우 아동을 즉시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데 발효될 수 있음.

- 출입 금지 명령: 가해자를 가정집으로부터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릴 때 발효 될 수 있음.
  - 아동 평가 명령: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사회 복지사가 아동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효 될 수 있음.
  - 경찰에 의한 제거: 경찰이 법원명령 없이도 아동을 안전한 장소로 72시간까지 옮길 수 있게 함.
-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에서는 국립 아동학대 예방협회가 다른 자선단체와 다르게 아동을 대신하여 개입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한 힘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음. 이 세 지역에서 보호, 감독, 아동평가명령의 법적절차를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지방당국과, 국립 아동학대 예방협회가 있음. 1989년 아동법 sec.31 (잉글랜드, 웨일즈)<sup>5)</sup>, 1995년 아동명령 sec.49(북아일랜드).<sup>6)</sup>
- 아동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의 필요와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짐. 이 평가는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위탁된 시점으로부터 평일 기준 7일 안에 이루어져야 함.
- 중대한 피해에 대한 결정은 해당 아동을 보통의 아동의 건강, 발달 상태와 비교해보고 이루어짐. 해가 중대한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경찰, 교육, 건강 에이전시 등의 지방 당국이 해당 아동의 가족 구성원과 함께 아이를

5)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9/41/contents>

6) <http://www.legislation.gov.uk/nisi/1995/755/contents/made>

평가하고 모인 증거 등에 기반하여 전문적인 결정을 내리게 됨 (1989년 아동법, sec. 31(영국, 웨일즈), 1995년 아동명령 제2조, 50조(북아일랜드)<sup>7)</sup>, 아동법 part 1(스코틀랜드)<sup>8)</sup>).

-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의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음.
  - 더 이상의 아동 보호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아동이 해를 입지 않았거나 중대한 해를 입을 위기에 처해있지 않다고 보는 경우, 더 이상의 아동 보호 조치 대신에 아동과 가족들은 필요할 경우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정: 아동이 사회 복지 사업으로부터 추가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아동은 공식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지정됨. 지방 당국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함은 물론 복지를 고취할 필요할 필요가 있고 국가에서도 이러한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조치 논의: 초기 위탁시에 아동이 위해를 입을 중대한 위협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면 아동의 가족과 관련 전문가들이 그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여야 함. 아동, 부모, 가족 구성원 및 다른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통해 아동이 위협에 처해있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 1989년 아동법 sec.47에 따른 수사가 시작됨.<sup>9)</sup>
- 1989년 아동법 sec.47 아동 피해수사: 수사의 과정에서 아동의 복지와 안전 필요성이 인정되고, 아동이 중대한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아동 보호 회의(conference)를 열어야 함.<sup>10)</sup>

---

7) <http://www.legislation.gov.uk/nisi/1995/755/contents/made>

8)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5/36/contents>

9)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9/41/contents>

1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9/41/contents>

- 아동 회의(conference): 사회 복지과, 경찰서, 건강 관련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해당 아동을 잘 알고 있는 가족, 학교나 의사 등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아동에 대한 모든 위험 요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논의함.
- 이 컨퍼런스에서 아동보호계획이 수립되고 가족 구성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심 그룹이 구성되어 수립된 계획을 발전시키고 이행함.
- 아동보호계획에는 사회복지과가 아동의 복지를 어떻게 할지, 아동이 위해를 입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가족들이 어떤 보호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함.
- 컨퍼런스는 아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후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고,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거나 중대한 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컨퍼런스는 주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함(1989년 아동법 sec.47).

### 3.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

- 지방 당국이 아동이 중대한 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경우 해당 아동의 보호를 위해 위탁 부모, 아동의 집(사회복지의 감독 아래), 보육원, 학교와 같은 보호 단체로 아동의 거처를 옮길 수 있음.
- 아동이 처한 위험의 정도가 심각하여 법원을 바로 개입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먼저 아동을 아동 부모의 보호 아래 지내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아동의 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함. 그 전에 마지막 시도로 아동의 부모에 대한 사전 법적 절차에 관한 회의를 가짐.

- 사전 법적 절차 회의에는 지방 당국, 아동의 부모, 아동 부모의 변호사가 모여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방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지방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지 의논하게 됨.
- 양쪽에서 동의를 할 경우 아동의 부모와 지방 당국은 앞으로 따라야할 공식적인 동의서를 작성하게 됨. 아동의 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나 동의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 당국은 아동이 보호단체로 보내지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
- 법원이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친권 등 아동을 위한 부모의 법적 책임을 지방 당국으로 위임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보호 법적 절차는 주로 가정 법원에서 열리나 좀 더 복잡한 사건일 경우 고등 법원에서 열림. 법원은 아동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 줄 후견인을 지정하고, 아동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경우 아동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음.
- 아동의 사회 복지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을 만들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 4. 아동학대 중대 사례 검토(Serious Case Review; SCR)

- 최근에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지침에 포함하는 ‘중대한 해(serious harm)’의 정의가 새로 포함됨. 관련 연방차원의 독립 전문가 패널이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가 내린 몇몇 중요 사례를 검토하고



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다고 지적이 제기되자 이에 따라 ‘중대한 해’에 대한 정의가 실리게 됨.

- ‘중대한 해’는 아동이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심각한 혹은 장기적인 육체적 또는 정신적, 사회적, 행동 발달 장애 등을 포함. 지침에서는 정의가 이에 한정되지만은 않는다고 명시하고 아동이 회복되었을 시라도 ‘중대한 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봄. 또한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는 ‘중대한 해’의 발생여부를 결정할 시에 조사 근거에 기준하여야 함.
- ‘중대 사례 검토’는 학대나, 방치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될 경우 열리게 되며, 가장 큰 목적은 아동학대의 원인과 진행 과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교훈을 얻음으로써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함에 있음.
- 중대 사례 검토 과정: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는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가이드의 지침을 따라 중대 사례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중대 사례 검토 수행 여부는 사건이 통보되고 3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고,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는 국가 독립 전문가 패널과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에 이 결정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는 중대 사례 검토를 주재할 최소 한 명 이상의 검토 위원들을 임명하여야 하고 이 검토 위원들은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와 사건과 관련된 조직에서 독립되어야 함.
  -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는 검토 위원들의 명단을 국가 독립 전문가 패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검토절차 과정에서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는 사건의 아동과 가족들과 연관이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조직들의 적절한 진술이 있도록 보장 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진술서를 쓰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는 중대 사례 검토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보고서 작성과 조사결과의 공개: 중대 사례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의 답변을 담은 보고서는 아동 학대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의 방안의 제시를 위하여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의 웹사이트에 최소 12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함.
- 보고서는 사건에 연루된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의 복지가 위협받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함.
- 또한 보고서는 정확한 사건의 경위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점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는 웹사이트에 게재하기 일주일 전에 보고서 사본을 국가 독립 전문가 패널에 제출하여야 함.

### Ⅲ.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 관련 법률

#### 1. 개 관

- 영국에는 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업데이트 되고 있음. 또한 폐지되는 무수히 많은 법과 지침들이 존재함.

### 제 3 장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 정책 및 제도

- 의회에서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게 되면 기존의 법률은 이에 따라 수정됨.
- 이러한 법은 법원에서 해석하여 적용하게 되고 이는 판례법에 해당되며 성문법을 수정하는 데 기초가 되기도 함.
- 영국의 모든 법이 영국 전체(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를 다 아우르는 것은 아니며 법률 시스템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아동보호를 위한 법률은 민법과 형사법의 두 가지 체계로 분류할 수 있음.
- 민법은 다시 아동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과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시스템과 과정을 규정하고 있고, 이혼과 접촉과 같은 가족관련 소송절차를 다루고 있음.
- 형사법은 아동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를 다루고 있음.
- 1933년 아동 및 청소년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을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한 첫 법률로 영국의 아동은 약 80년 전부터 영국 정부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 왔음.<sup>11)</sup> 동 법률은 현재까지 적용되어지고 있고, 동법은 Schedule 1 범죄행위로 언급되는 아동학대 행위를 나열함.
- 2015년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를 했을 경우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는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을 제정하였

---

1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Geo5/23-24/12>

음.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의 제정으로 기존의 관련 법령인 ‘아동 및 청소년 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을 보완하였음.

## 2.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 법률의 발달과정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력이양 전, 영국의 아동 보호법은 웨스트민스터(의회)에서 입법됨. 영국 안의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각 지방정부는 각기 다른 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법률의 기본 골자는 유사함.
- 1999년 이래 권력이양의 과정에서 권력과 책임이 런던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에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지역 국가 정부로 넘어감.
- 사회적 논란을 가져 온 여러 차례의 아동 학대 사망사건들 이후 아동 보호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그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1880년대 이래로 아동학대 혐의를 가진 사람들을 기소하는 법이 제정됨.
- 1945년: 12살의 나이에 양아버지에게 살해된 Dennis O'Neill은 잉글랜드에서 첫 번째로 알려진 아동의 죽음으로 Curtis 위원회가 보고함.
- 1973년: 7살에 사망한 Maria Colwell이 현재의 아동 보호법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됨.
- 1984년: 4살 여아인 Jasmine Beckford의 사망을 포함한 다른 아동들의 사망사건을 둘러싼 수사로 인해 영유아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강화됨.

- 1989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현재 아동보호법의 법적 골자가 되는 아동법이 1989년에 제정됨. 북아일랜드의 1995년 아동명령과 스코틀랜드의 1995년 아동법도 이를 따름.
- 2000년: 8살이었던 Victoria Climbié의 사망 사건에 대한 사회복지사 Laming 경이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아동 복지 시스템이 재정비하는 결과로 나타남.<sup>12)</sup>
- 2002년: 10살이었던 Holly Wells와 Jessica Chapman의 사망으로 아동에게 위협성이 있는 성인들로부터 아동을 보고하기 위한 법이 더 강화되게 됨.

### 3. 1989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sup>13)</sup>

- 현재 아동 보호 시스템은 1989년 아동법에 기초해 있음.
- 동법 section 1은 핵심원칙(paramountcy principle)으로 아동의 양육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의 복지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법원은 아동의 원하는 바와 감정을 고려해야하고 아동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모든 노력은 아동의 가정과 가족의 연결고리를 보호하는 노력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1989년 아동법에서 ‘부모의 책임(parental

---

12) 동 사건은 영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한 사건으로 아프리카 코티디브아르 출신의 빅토리아(당시 만 8세)가 보호자인 이모할머니와 할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로 저체온증상과 장기손상, 영양실조의 실신 상태에서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임. 후에 경국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담뱃불로 지지거나 24시간 넘게 묶어서 감금하고, 자전거체인이나 와이어 망치로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영국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린 사건임.

13)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9/41/contents>

responsibility)’ 규정을 도입하였음. 이는 아동과 아동의 소유물에 관련된 법으로 정해진 부모의 권리, 의무, 책임감이라고 정의하고 있음.<sup>14)</sup>

- 1989년 아동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당국과 법원이 해야 할 직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지방당국은 “아동이 중대한 해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고통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이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sec.47).
  - 지방당국은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그의 가족과 다른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sec.17).
- 1989년 아동법은 ‘국립 아동학대 예방협회’를 규정하면서 국립 아동학대 예방협회가 아동이 ‘중대한 해’로 인해 고통 받거나, 고통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1989년 아동법은 ‘해(harm)’를 규정하면서, 학대(ill-treatment; 성적 학대와 비신체적 학대를 포함) 또는 건강발달(신체적 또는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행동적 발달을 포함)의 손상으로 규정함(sec.31).
- 법률에 ‘중대한(Significant)’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건강과 발달정도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비슷한 아동의 상태와 비교해 봐야 한다고 명시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중대한 해’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에 대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음.

---

14)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9/41/contents>

#### 4. 1989년 아동법 이후

- 1989년 아동법 제정 이후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많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됨.
- 1991년 12월 16일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이 영국에서 비준됨. 정부는 이 협약을 따르고 아동보호지침 안에서 참고해야 된다고 보았지만 영국 전체를 규율하지는 않음. 지금까지 웨일즈만이 UN 협약 원칙을 자신들의 법률에 포함시킨 영국의 유일한 지방임.
-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은 유럽인권보호조약을 영국법 안에 포함시킨 사례임.
  - 인권법은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법의 시점으로 아동도 인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 법률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보고, 정부나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인권법에 최대한 준해야 한다고 명시함. 이러한 권리는 개인과 가정사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고 있음.<sup>15)</sup>
- 2001년 아동 감독관에 관한 웨일즈 법(Children's Commissioner for Wales Act 2001)은 영국에서 최초로 아동 감독관을 만듦.<sup>16)</sup>
  - 감독관(Commissioner)의 주요 임무는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고취하고 보고하는 데 있음.

15)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8/42/contents>

16)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1/18/contents>

- 그 이후로 법률들을 통해 북아일랜드(아동관 청소년 명령을 위한 감독관; The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NI) Order 2003)<sup>17)</sup>, 스코틀랜드(아동관 청소년 법을 위한 감독관;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03), 잉글랜드(2014년 아동법 sec.1-9; 2004년 Children Act 2004, sections 1-9)에서 아동 감독관 규정을 두고 있음.
- 2002년 교육법(Education Act 2002)은 학교 관리 기관들과, 지방 교육 당국들 그리고 교육 기관들이 아동의 복지 향상과 보호를 위한 협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sup>18)</sup>
- 2002년 입양과 아동법(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의 sec.120은 가정폭력 목격을 ‘해(harm)’에 대한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고 1989년 아동법을 수정함.<sup>19)</sup>

### 5. 2004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2004)<sup>20)</sup>

- 2000년 8살 Victoria Climbié이 사망한 이후로 정부는 당시 사회 복지 관련 조사관이었던 Laming 경에게 영국의 아동보호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과 지침이 필요성 판단과 상황을 결정하기위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였음.
- Laming 경이 2003년에 작성한 Victoria Climbié 수사 보고서에 따라 영국 정부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keeping children safe’와 ‘모든 어린이는 중요하다’는 보고서(영국 정부의 의회 심의용

---

17) <http://www.legislation.gov.uk/nisi/2003/439/contents/made>

18)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2/32/contents>

19)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2/38/contents>

2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4/31/contents>



정책 제안서): Every child matters green paper' 를 발간하고, 이를 계기로 2004년 아동법 2004을 입법하게 됨.

- 동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음. 다만, 2010년 5월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당선되면서 아동보호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이 현재 영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음.
- 2004년 아동법은 1989년 아동법을 대체하거나 수정하기 보다는 독립된 법으로 존재하고, 대신에 그 전에 규정하지 않았던 아동에 제공되는 통합된 과정을 명시함.
  - 1989년 아동법에서 아동 감독관의 자리를 마련한 데 이어, 2004년 아동법에서는 지방당국이 아동복지 서비스의 책임자 및 주요 구성원을 지정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2004년 아동법은 지방당국과 지방당국의 서비스 파트너(경찰, 건강 서비스 제공자, 청소년 사법시스템 포함)들이 협력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를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제도를 정비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를 두고 아동학대 관련 수사와 조사(sec.14)의 권한을 부여함. 이로 인해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는 해당되는 지역의 아동사망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됨.
- 동법 sec.58은 신체적 처벌에 대한 강화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가해자가 아동을 상해, 또는 학대한 혐의를 받을 경우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방어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가해자에게 폭행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야할 정도로 아동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아동의 신체에 대한 처벌이 '합당한 처벌'이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음.

## 6. 2004년 아동법 이후

- 2006년 아동과 입양법(Children and Adoption Act 2006)은 법원이 이혼을 한 부모가 논쟁을 할 경우 아동 접촉을 허가하고, 접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에 좀 더 신축성 있는 권한을 부여함.<sup>21)</sup>
- 2008년 아동과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2008)은 2007년에 발간된 아동에 대한 보살핌의 중요성에 대한 백서(영국 정부의 보고서)(Care matters white paper)의 정책 조언에 따라 만들어진 법으로 기관에 의해 돌봐지고 있는 아동에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sup>22)</sup>
  - 이 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일부분) 지방에 적용되며 호적 담당자는 모든 아동의 사망을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9년 국경, 시민권과 이주법(Border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09)은 아동과의 접촉이 있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영국 국경관리국이 아동의 복지를 고취시키고 보호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sup>23)</sup>
- 2011년 교육법은 학교의 훈계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여 교사에 대한 학대혐의를 관련 기관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둠.<sup>24)</sup>
- 최근 아동에 대한 물리적 체벌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에 대한 방치(neglect)와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로 영국

---

2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6/20>

22)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8/23>

23)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9/11>

24)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1/21/contents/enacted>

교육부에서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체벌뿐 아니라 방치 및 정서적 학대가 어린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음.

- 잉글랜드에서만 약 150만명의 아동들이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비록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가정 폭력과 방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2015년 영국의회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동에 대한 학대의 범위를 넓히는 새로운 법률인 일명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을 제정하였음.
-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의 제정으로 기존의 관련 법령인 ‘아동 및 청소년 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을 보완하였음.
- 동 법률에서는 아동학대의 범주를 규정하는 용어로 기존의 불필요한 고통(unnecessary suffering) 대신 상해(harm)로 대체하고, ‘harm’에는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물리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발달에 고의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anything that deliberately harmed a child’s physical, intellectual, emotional, social or behavioural development) 등 나타나는 모든 학대를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의 범위를 확장시켜 규정하고 있음.<sup>25)</sup>
- 동법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를 했을 경우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영국 내 정치권,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 ‘정서적 방임’까지 처벌한다는 조항 때문에 논란이 있음.

---

25)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593042/Cinderella-Law-stop-emotional-abuse-children-Parents-fail-love-face-prison.html>

- 정서적 학대의 개념과 범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고, 불명확한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부모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의 논란임.
- 특히 유대인이나 이슬람교인들이 그들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자녀들에게 종교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것 등이 보는 시각에 따라 정서적 학대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임.

## IV. 기타 영국의 영유아 학대방지 관련 법률

### 1. 개 관

-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기관의 의무를 정하는 민법뿐만 아니라 위험 요인을 보유한 성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게 모니터링 하는 많은 법률들이 있음.

### 2. 1997년 성범죄자 법(Sex Offenders Act 1997)<sup>26)</sup>

- 1997년 성범죄자 법(Sex Offenders Act 1997)에 따르면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997년 9월 이후부터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에 이름과 주소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26)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7/51/contents>

### 3.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t 2003)<sup>27)</sup>

-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t 2003)은 아동 범죄에 대한 법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 차일드 그루밍(폐쇄적인 상황에 놓여 있거나 정신적으로 미약한 미성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정신적으로 종속시켜 범죄 대상으로 삼는 것), 신뢰적 지의의 남용, 밀거래뿐만 아니라 영국 시민자가 외국에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까지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성 범죄자들의 모니터링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1997년에 만들어진 성범죄자법을 업데이트한 것임.

### 4. 2003년 여성 할례법(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2003)<sup>28)</sup>

- 2003년 여성 할례법(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2003)은 여성할례를 범죄시하는 기존의 법을 확대하여 입법한 것임.
- 영국 국적자나 영국 영구 거주자가 여자아이를 여성할례를 위해 외국으로 데려가거나, 다른 사람이 여자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갈 때 도움을 준다거나, 여성할례가 합법인 나라에서 직접 여성할례를 시행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처벌함.

---

27)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3/42/contents>

28)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3/31/contents>

### 5. 2004년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sup>29)</sup>

- 2004년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은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죄를 떠넘기는 것, 법적인 허점을 완전히 막기 위해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의 사망을 야기하거나 허용한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함.
- 이를 통해 중대한 해가 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이 그 위험성을 알고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2012년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수정법률)은 이에 더 나아가 아동이나 연약한 성인이 심각한 육체적 해를 입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한 경우까지 위법 행위로 규정함.

### 6. 2005년 중대 조직범죄와 경찰법(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sup>30)</sup>

- 2005년 중대 조직범죄와 경찰법(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은 영국 전체에 걸쳐 아동 착취와 온라인 보호 내용에 대한 골자를 담고 있음.
- 위험요인이 있는 성인이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원조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음.

---

29) <http://www.legislation.hms.gov.uk/acts/acts2004/20040028.htm>

3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5/15/contents>

##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 영유아 아동에 대한 폭력문제는 한국과 동일하게 영국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다양한 영유아 학대방지 제도를 추진하고, 입법적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 검토한 바와 같이 영국 내 논란을 고려하더라도 ‘신데렐라법’은 우리에게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개인적 범죄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학대의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 전문교육과 상담 및 관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학대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에 대한 학대문제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관계회복과 아동에 대한 정신적 상처에 대한 치유가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방임과 정서적 학대까지 아동학대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시사점이 있음. 물론 이에 대해서는 비판론자들의 지적처럼 과도한 법률 제정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아동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확대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아동 보호에 있어 영국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고 판단됨.
- 아동의 보호정책의 실행에 있어 지역 아동보호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경찰, 병원 등 의료기관, 법원 등 모든 관련 기관이 하나가 되어 영유아 아동에 대한 학대방지정책을 추진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음.

- 어른들과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공감대의 확산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공감대가 실제 제도적인 개선으로 나타나야함. 우리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 많은 사회적 논란과 난관이 있어 온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영유아 아동에 대한 보호가 쉽지 않은 문제임을 알 수 있음. 이런 점에서 영국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은 평가할만 함.



## 관련법률 및 참고자료

1.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http://www.legislation.gov.uk/ukpga/Geo5/23-24/12>
2. Children Act 1989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9/41/contents>
3. Children (Scotland) Act 1995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5/36/contents>
4. Children (Northern Ireland) Order 1995  
<http://www.legislation.gov.uk/nisi/1995/755/contents/made>
5. Sex Offenders Act 1997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7/51/contents>
6. Human Rights Act 1998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8/42/contents>
7. Children's Commissioner for Wales Act 200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1/18/contents>
8. 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2/38/contents>
9. Education Act 2002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2/32/contents>
10. Sexual Offences Act 2003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3/42/contents>
11.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2003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3/31/contents>

12. The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Northern Ireland) Order 2003  
<http://www.legislation.gov.uk/nisi/2003/439/contents/made>
13.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03  
<http://www.legislation.gov.uk/asp/2003/17/contents>
14.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http://www.legislation.hmso.gov.uk/acts/acts2004/20040028.htm>
15. Children Act 2004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4/31/contents>
16. 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5/15/contents>
17. 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Act 2006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6/47/contents>
18. Children and Adoption Act 2006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6/20>
19.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Scotland) Act 2007  
<http://www.legislation.gov.uk/asp/2007/14/contents>
20. 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Northern Ireland) Order 2007  
<http://www.legislation.gov.uk/nisi/2007/1351/contents>
21. Forced Marriage Act (Civil Protection) 2007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7/20>
22.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2008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8/23>

23.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8/4>
24. Sexual Offences (Northern Ireland) Order 2008  
<http://www.legislation.gov.uk/nisi/2008/1769/contents>
25. Border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09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9/11>
26. 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 2009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9/22>
27. Sexual Offences (Scotland) Act 2009  
<http://www.legislation.gov.uk/asp/2009/9>
28. Rights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Wales) Measure  
<http://www.legislation.gov.uk/asp/2011/2>
29. Safeguarding Board Act (Northern Ireland) 2011  
<http://www.legislation.gov.uk/nia/2011/7/section/1>
30. Education Act 201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1/21/contents/enacted>
31.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mendment) Act 2012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2/4/contents/enacted>
32. Protection of Freedoms Act 2012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2/9/contents/enacted>
33.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2015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19595/Working\\_Together\\_to\\_Safeguard\\_Children.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19595/Working_Together_to_Safeguard_Children.pdf)